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13 선고 2021가단33888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정

피 고 1. 부산광역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

담당변호사 박옥봉

2. 부산광역시 사하구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13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부산 사하구 C 공원 78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부산광역시는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0. 4. 7. 접수 제33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위 법원 1992. 9. 14. 접수 제2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980. 5. 22.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피고 부산광역시는 1980. 7. 4. 같은 해 6. 14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1992. 9. 14. 같은 해 8. 28.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나. D는 원고의 처이고 2009. 4. 12.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D는 신군부 시절인 1980. 6.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끌려가 약 3일간 고문을 당한 후 집에 돌아왔고, 집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1980. 6. 14. 피고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.

위 증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부산광역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,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원인무효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판 단

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가 1980. 7. 4. 같은 해 6. 14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고문 사실을

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민석